

공 고

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-356호

**대우효령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
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(안) 공람·공고**

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38번지 대우효령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결정(안)을 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람 공고합니다.

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관계 서류를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, 방배3동 주민센터, 대우효령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 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2월 19일

서 초 구 청 장

1. 공람기간 : 2026. 2. 19. ~ 2026. 3. 23. (30일 이상)

2. 공람장소

-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(구청본관 8층) (☎ 02-2155-7348)
- 방배3동 주민센터 (☎ 02-2155-7801)
- 대우효령아파트 관리사무소 (☎ 02-525-1280)

3. 공람사유 : 대우효령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

4. 공람내용

- 본 공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 장소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, 모든 관계 도서는 본 공람으로 고지된 것으로 갈음

가. 대우효령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사항

1) 정비구역 지정 조서

구 분	정비사업 명칭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규	대우효령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	서초구 방배동 1038번지	-	증) 19,310.6	19,310.6	-

2)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

구 분	명 칭	면 적(㎡)	비 율(%)	비 고
합 계		19,310.6	100.0	-
정비기반시설 등		-	-	-
획 지		19,310.6	100.0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
3)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
가) 용도지역 결정 조서

구 분	면 적(㎡)			비 율(%)	비 고
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19,310.6	-	19,310.6	100.0	-
제3종일반주거지역	19,310.6	-	19,310.6	100.0	-

나) 용도지구 결정 조서

- 해당사항 없음

4)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

가) 공공·문화·체육시설

(1) 사회복지시설

■ 사회복지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①	사회 복지 시설	데이케어센터 등	방배동 1038번지	-	증) 870	870	-	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(입체적범위 결정)

※ 870㎡은 수평투영 면적임

※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의 성능수준, 설비, 세부용도 등은 서울사서초구와 협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확정하며, 준공시 기부채납 (대지비분 포함)

※ 향후 토지 및 감정평가 금액 및 건축계획에 따라 면적·층고·형태는 조정될 수 있음

■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치	구분	기정	변경	변경후	최 초 결정일	비 고
신설	①	사회복지시설	방배동 1038번지	층수	-	지상1층, 지하 2,3,4층	지상1층, 지하 2,3,4층	-	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는 입체적 결정도(공간적범위 결정도) 참조
				수평투영면적 (㎡)	-	증) 870	870		

■ 사회복지시설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①	사회복지시설	• 사회복지시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- 층수 : 지상1층, 지하2층, 지하3층, 지하4층 - 수평투영면적(㎡) : 870 - 도시계획시설 연면적(㎡) : 2,950.52	•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인한 구역 내 사회복지시설 신설

※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연면적은 전용·공용·부대시설 등을 합한 면적임

5)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

구 분	시설의 종류		위 치	면 적(㎡)	비 고
신설	합 계		획지	2,217.6	
	관리사무소			43.0	
	경비실			30.0	
	주민 공동 시설	합 계		2,144.6	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적용
		경로당		330.8	
		주민운동시설		331.8	
		작은도서관		160	
		다함께돌봄센터		85	지상
		주민운동시설		300	지하
		어린이놀이터		712	지상
주민공동시설	225	지상			

주)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시 변경될 수 있으며, 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”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「건축법」 등 관련법령 기준 적용

6) 기존 건축물의 정비·개량에 관한 계획

결정 구분	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치	용적률(%)					비고
	명칭	면적(㎡)	명칭	면적(㎡)		계	존치	개수	철거후 신축	철거이주	
신설	대우효령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	19,310.6	획지	19,310.6	방배동 1038번지	7	-	-	7	-	-

7) 건축시설 계획

결정 구분	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치	주용도	건폐율(%)	용적률(%)		층수/ 높이
	명칭	면적(㎡)	명칭	면적(㎡)				정비계획	법적상한	
신설	대우효령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	19,310.6	획지	19,310.6	방배동 1038번지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50 이하	237.1 이하	300 이하	최고 110m 이하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			- 총 세대수 : 공동주택 512세대 (국민주택규모임대 75세대) - 전용 60㎡ 이하 : 138세대 - 전용 60㎡ 초과 ~ 85㎡ 이하 : 263세대 - 전용 85㎡ 초과 : 111세대 - 주택 규모별 건설계획(전용면적 기준)							
			구 분	전용면적 (㎡)	세대수(세대)			비율(%)		
					소계	분양	국민주택규모임대			
			60㎡ 이하	59㎡	138	63	75	26.9		
			60㎡ 초과~ 85㎡ 이하	84㎡	263	263	—	51.4		
			85㎡ 초과	93㎡	52	52	—	10.2		
				103㎡	59	59	—	11.5		
			합계		512	437	75	100.0		
						512				
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			건축한계선 지정 : 대상지 북측 효령로변 구역경계선으로부터 3m (보도부속형 전면공지)							

8) 용적률 계획

구 분	산 정 내 용							
토지이용 계획	구역면적 (㎡)	획지면적 (㎡)	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(㎡)	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·공유지(㎡)	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(㎡)	정비기반시설 외 신설 공공시설 등 면적(㎡)		
						소계	토지지분	건축물 환산부지 면적
	19,310.6	19,310.6	-	-	-	881.8	643.8	238.0
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(순부담)	◦ 순부담률 : 4.6%(구역면적 대비) ◦ 순부담면적 = 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 -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·공유지 - 대지내 용도폐지되는 국·공유지 + 정비기반시설 외 신설 공공시설등 면적 = 0.0㎡ - 0.0㎡ - 0.0㎡ + 881.8㎡ = 881.8㎡ (4.6%)							
신설 정비기반시설 + 공공시설 등	부지(토지) 면적	◦ 지역생활SOC시설 : 토지지분 643.8㎡ = 계획연면적 / 전체연면적 × 대지면적 = 2,950.52㎡ / 88,495.89㎡ × 19,310.6㎡						
	건축물 환산부지 면적	◦ 지역생활SOC시설 : 238.0㎡ = (설치비용 × 건축연면적) / (개별공시지가 × 부지가액) = [(3,783,000원 × 2,014.5㎡) + (931,000원 × 936.0㎡(부설주차장))] / (17,837,000원 × 2) ※ 공공시설 건축물 공사비 : 2024년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공공업무사무소 적용 ※ 공공시설 건축물 부설주차장 : 공동주택 지하공사비(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) 적용						
기준용적률	◦ 210% ※ 「2030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」에 의거 제3종일반주거지역 기준용적률 적용							
허용용적률	◦ 225% = 기준용적률 + 인센티브 = 210% + 15%							
	항 목					인센티브	적 용	
	층간소음해소	• 바닥(중량)충격음 차단성능 2등급 이상 - 1등급 5%, 2등급 3%				5%p 이내	2등급 (*적용 3%)	
	친환경 건축물	①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 - ZEB1 7.5%(15%), ZEB2 7%(14%), ZEB3 6.5%(13%), ZEB4 6%(12%), ZEB5 5.5%(11%) ② 녹색건축 인증 - 최우수 등급 3%(6%), 우수 등급 1.5%(3%) ※ 친환경 항목 및 인센티브량은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관련 기준 변경 시 연동				7.5%p (15%p) 이내	ZEB5 5.5%, 우수 등급 1.5% (*적용 7%)	
	방재안전	• 화재·소방·피난안전등 공동주택 안전성능개선 또는 저류지 설치 시 - 안전성능을 의무기준보다 초과 설치·개선하는 경우 등 관련 위원회 심의·자문을 통해 적용				5%p이내	안전성능 의무기준 초과설치, 개선 (*적용 5%)	
	합 계					20% 이내	15% (*적용 15%)	
상한용적률 (정비계획 용적률)	◦ 237.1% - 상한용적률(정비계획 용적률) = 허용용적률 × {1+(1.3×α토지×가중치) + (0.7×α건축물)} = 225% + {1+(1.3×0.0345×1+0.7×0.0128)} = 237.1%				◦ α =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면적 /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 후 면적 ▶ α토지 = 0.0345 = 643.8/(19,310.6-643.8) ▶ α건축물 = 0.0128 = 238.0/(19,310.6-643.8)			
법적 상한용적률	◦ 300% ※ 향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							

9) 정비사업 시행계획

구분	시행 방법	시행예정시기	사업시행예정자	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			비 고
				기존	계획	증감	
신규	재건축	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	대우효령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	364	512	증) 148	-

10)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

구 분		계	조합원분양	일반분양	국민주택규모임대
합 계		512	364	73	75
60㎡ 이하	소 계	138	27	36	75
	30㎡이하	-	-	-	-
	30㎡초과 ~ 50㎡이하	-	-	-	-
	50㎡초과 ~ 60㎡이하	138	27	36	75
60㎡초과 ~ 85㎡이하		263	226	37	-
85㎡ 초과	소 계	111	111	-	-
	85㎡초과 ~ 135㎡이하	111	111	-	-
	135㎡초과	-	-	-	-

11) 공공주택(법적상한용적률 완화) 건설에 관한 계획

구분		내용				
법적상한용적률 (건축계획)		◦ 300.0% (건축계획용적률 : 299.97%)				
상한용적률 (정비계획용적률)		◦ 237.1%				
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 의무면적	용적률 증가분	◦ 62.9% (300.0% - 237.1%)				
	증가된 용적률의 50%	◦ 31.45% (62.9% × 0.5)				
	의무 연면적	◦ 6,073.18㎡ 이상 (19,310.6㎡ × 31.45%)				
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 확보 계획 (향후 건축심의에서 최종 결정)		동수	세대규모		세대수	비고(연면적)
			전용면적	공급면적		
		1	59.96㎡	81.80㎡	75	6,135.10㎡

12) 환경성 검토 결과

검토항목	목표기준	준수 여부	현황 및 검토결과	계획의 반영사항	비고
비오름	비오름보전 등급 향상	○	◦ 비오름유형평가 5등급 및 개별비오름 평가제외로 조사됨	◦ 조경녹지 등 녹지공간의 확보 및 비오름 기능 향상	-
동·식물상	동·식물상보호	○	◦ 사업대상지 및 주변 지역으로 보호할 만한 동·식물은 분포치않음	◦ 조경계획을 통한 서식환경 조성	-
녹지네트워크	녹지연결성	○	◦ 일부 주거지역 내 식재 수목	◦ 조경계획을 반영하여 녹지 확보	-
자연환경자산	자연환경 보전	-	◦ 사업대상지 주변 보호지역 없음	-	-
토양	토양오염 최소화	○	◦ 토양측정망 검토 결과 기준만족	◦ 공사시 저감대책 수립	-
지형·지질	지형·지질영향 최소화	○	◦ 기 조성부지로 지형변화 미미	◦ 현지형을 고려한 계획 수립 ◦ 발생 사토처리 계획 수립	-
물순환	자연물순환 유지	○	◦ 대상지 내 녹지 계획	◦ 생태면적률 32.85% 계획	-
수질	수질오염 방지	○	◦ 오수는 기존관거를 통해 탄천물재생센터로 유입·처리	◦ 공사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토사유출 저감	-
바람·열	바람길 확보 열환경 영향 최소화	○	◦ 서울 기상청 ⇒ 연평균풍속: 1.5m/s ◦ 열환경 취약지역 조사	◦ 바람길을 고려한 건축배치계획 수립 ◦ 열섬효과 최소화하는 친환경 도시계획기법 적용	-
대기질·악취	대기오염 최소화	○	◦ 공사시 비산먼지 및 운영시 대기오염물질 발생 예상 ◦ 대기오염지역, 악취관리지역 해당없음	◦ 비산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저감방안 수립	-
온실가스·에너지	온실가스 저감 에너지자립률 상향계획 수립	○	◦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발생 예상 ◦ 계획 특성상 과도한 에너지소비를 유발하지 않음	◦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이산화탄소 저장, 흡수가 가능토록 계획 및 신·재생에너지 확보 ◦ 건축물 에너지수요 감축 및 녹색건축물 활성화 ◦ 친환경 건축자재 선정	-
자원순환	폐기물발생량 최소화	○	◦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이 예상됨	◦ 서초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적정 처리	-
소음·진동	규제기준 만족	○	◦ 공사시 및 운영시 소음·진동 영향 예상	◦ 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◦ 민원발생 최소화 대책 수립	-

나. 대우효령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

1)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

구 분	정비사업 명칭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규	대우효령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	서초구 방배동 1038번지	-	증) 19,310.6	19,310.6	-

2)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

가) 용도지역 결정 조서

구 분	면 적(㎡)			비 율(%)	비 고
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19,310.6	-	19,310.6	100.0	-
제3종일반주거지역	19,310.6	-	19,310.6	100.0	-

나) 용도지구 결정 조서 : 해당사항 없음

3)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

가) 공공·문화·체육시설

(1) 사회복지시설

■ 사회복지시설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 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신설	①	사회 복지 시설	데이케어센터 등	방배동 1038번지	-	증) 870	870	-	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(입체적범위 결정)

※ 870㎡은 수평투영 면적임

※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의 성능수준, 설비, 세부용도 등은 서초구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확정하며, 준공시 서초구에 기부채납(대지지분 포함)

※ 향후 토지 및 감정평가 금액 및 건축계획에 따라 면적·층고·형태는 조정될 수 있음

■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구분	기정	변경	변경후	최 초 결정일	비 고
신설	①	사회복지시설	방배동 1038번지	층수	-	지상1층, 지하 2,3,4층	지상1층, 지하 2,3,4층	-	도시계획시설 결정 범위는 입체적 결정도(공간적범위 결정도) 참조
				수평투영면적(㎡)	-	증) 870	870		

■ 사회복지시설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①	사회복지시설	- 사회복지시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- 층수 : 지상1층, 지하2층, 지하3층, 지하4층 - 수평투영면적(㎡) : 870 - 도시계획시설 연면적(㎡) : 2,950.52	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인한 구역 내 사회복지시설 신설

※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연면적은 전용·공용·부대시설 등을 합한 면적임

4)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

가)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가 구	면적(㎡)	획 지			비 고
			명칭	위 치	면적(㎡)	
신설	대우효령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	19,310.6	1	방배동 1038번지	19,310.6	공동주택용지

나)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

구 분	명 칭	용 도	비 고
신설	허용용도 획지1 (공동주택용지)	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아파트 「주택법」 제2조 제9호, 「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」 제6조 단지안의 부대시설·복리시설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,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「도시·군계획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」 중 - 제109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	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

다) 건폐율 계획

구 분	명 칭	용 도 지 역	건 폐 율	비 고
신설	획지 (공동주택용지)	제3종일반주거지역	50% 이하	-

라) 용적률 계획

구 분	명 칭	용도지역	용 적 률				비 고
			기 준	허 용	상 한		
					상한	법적상한	
신설	획지 (공동주택용지)	제3종일반주거지역	210%	225%	237.1%	300% 이하	-

▶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

구 분	인센티브	인센티브량	비 고
신설	층간소음 해소	- 바닥(중량)충격음 차단성능2등급 이상 - 1등급 5%, 2등급 3% ▶ 2등급 적용	3% 5% 이내
	친환경 건축물	① 에너지효율등급 및 ZEB 인증 - ZEB1 7.5%(15%), ZEB2 7%(14%), ZEB3 6.5%(13%), ZEB4 6%(12%), ZEB5 5.5%(11%) ② 녹색건축 인증 - 최우수 등급 3%(6%), 우수 등급 1.5%(3%) ※ 친환경 항목 및 인센티브량은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관련 기준 변경 시 연동 ▶ ZEB5 5.5%, 우수 등급 1.5% 적용	7% 7.5%p (15%p) 이내
	방재안전	- 화재·소방·피난안전등 공동주택 안전성개선 또는 저류지 설치 시 - 안전성능을 의무기준보다 초과 설치·개선하는 경우 등 관련 위원회 심의·자문을 통해 적용	5% 5%p이내
합 계			15% 20%이내

※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은 획지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한하여 적용

▶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

구 분	명 칭	용적률 완화	비 고
		공공시설 제공	
신설	획지 (공동주택용지내 제3종일반주거지역)	- 허용용적률 $\times (1 + 1.3 \times \text{가중치} \times \alpha[\text{토지}] + 0.7 \times \alpha[\text{건축물}])$ $= 225.0\% \times (1 + 1.3 \times 1 \times 0.0345 + 0.7 \times 0.0128)$ $= 237.1\%$ ▶ α: 공공시설 제공부지 면적 / 공공시설 제공후 대지면적 ◦ $\alpha_{\text{토지}} = (881.8 - 238.0) / (19,310.6 - 643.8) = 0.0345$ ◦ $\alpha_{\text{건축물}} = 238.0 / (19,310.6 - 643.8) = 0.0128$	-

※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은 획지내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한하여 적용

마) 높이 계획

구 분	명 칭	용 도 지 역	높이기준	비 고
신설	획지 (공동주택용지)	제3종일반주거지역	최고 110m 이하	-

바)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

구 분	적용위치	계 획 내 용	비 고
건축한계선	효령로 도로변	◦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 후퇴	도면 참고

사) 경관계획

(1) 건축물의 배치,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

구 분	적용위치	계 획 내 용	비 고
주동배치	공동주택 아파트	◦ 주동의 배치는 전체 동이 주 도로변과 평행 또는 직각 방향으로 일률적인 배치가 되지 않도록 계획 ◦ 평면 및 건물 형태 등으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차별화되지 않도록 혼합(Social Mix) 배치계획 ◦ 세대별 주거안정을 위한 사생활 보호 및 통풍이 원활한 평면구성	
입면계획		◦ 도시경관을 고려한 층수, 평면 및 단면 등을 다양화한 주동의 형태계획 ◦ 주동의 형태에 따른 입면디자인 다양화 계획 ◦ 건축물의 저층부 및 고층부는 주변과의 연계된 디자인으로 계획	
주민공동시설	주민공동시설	◦ 주민편의시설 활용 활성화를 위해 가급적 단지 진입부 및 중앙부에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하고 일조 및 주민활동을 고려하여 계획 ◦ 단지 내 보행동선을 중심으로 한 주민공동시설, 휴게공간 등을 계획하여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형성되도록 계획	

(2) 경관에 관한 계획

구 분	적용위치	계 획 내 용	비 고
외부공간 및 조경	단지 내부	◦ 단지내·외 도로의 경계부에는 담장 등의 설치를 지양하고 보행자를 배려한 공간으로 계획 ◦ 보행자 위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체계로 계획 ◦ 가로변에 면한 외부공간은 개방성을 고려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무장에 환경으로 계획 ◦ 외부공간의 바닥포장재료, 패턴 등은 주변과 조화롭게 계획	
스카이라인	공동주택 아파트	◦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는 주변과 조화를 이룬 스카이라인(SkyLine)을 형성토록 계획	

5)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

가)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

구 분	적용위치	계 획 내 용	비 고
전면공지	효령로 도로변	◦ 해당 도로변 건축한계선 후퇴부분은 보행자통행이 가능한 구조로 보도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	-

나)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계획

구 분	적용위치	계 획 내 용	비 고
차량출입구	효령로 도로변	◦ 대상지 진출입부 1개소 계획	

5. 관련도면 : 붙임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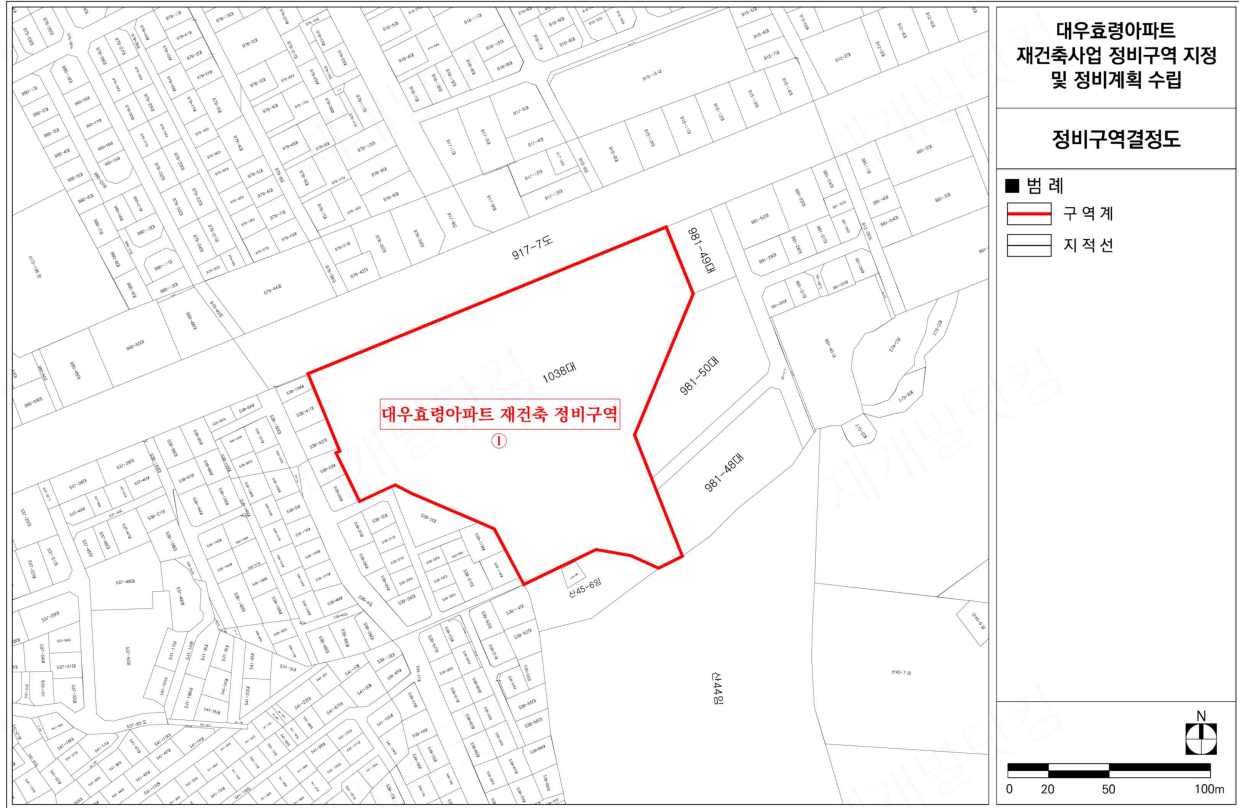
※ 첨부된 정비구역 결정도 등(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)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6.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: 생략 (기타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같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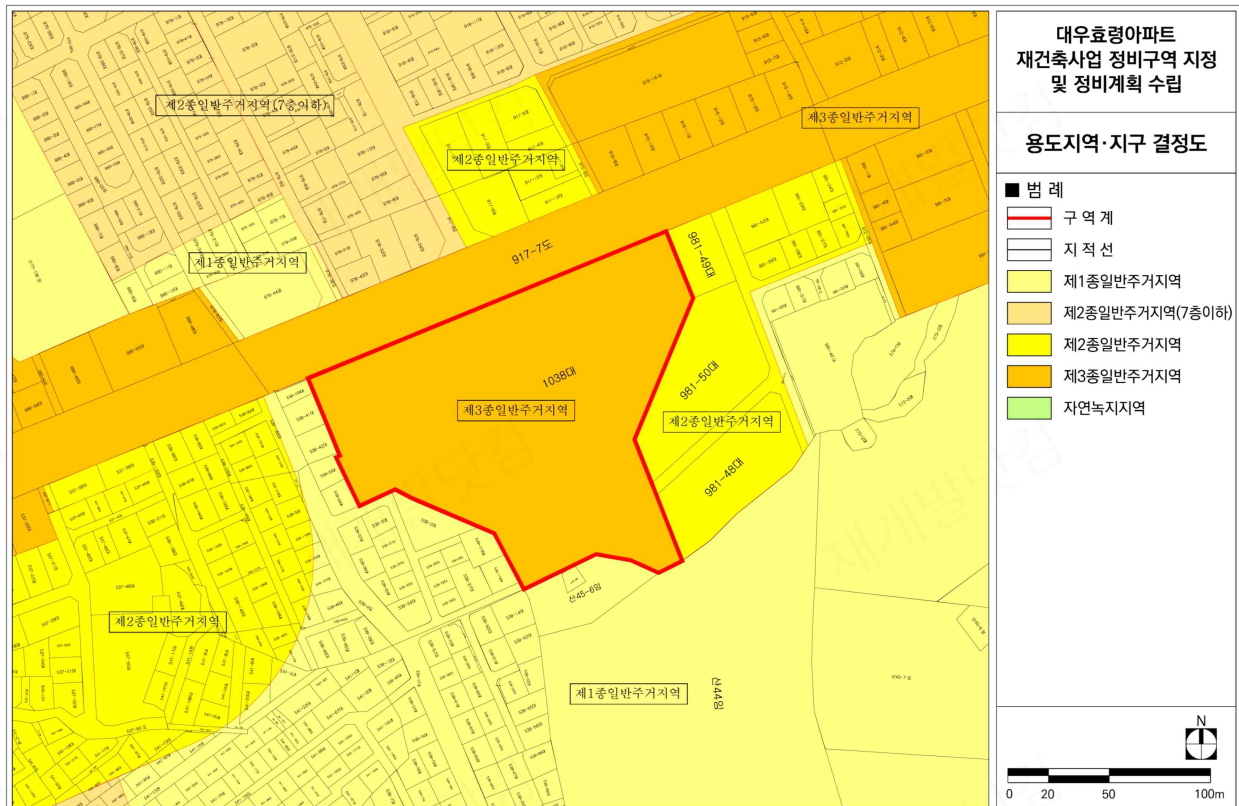
7. 공람장소 :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(☎ 02-2155-7348), 방배3동 주민센터(☎ 02-2155-7801) 및 대우효령아파트 관리사무소(☎ 02-525-1280)에 관계 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.

[붙임 : 관련도면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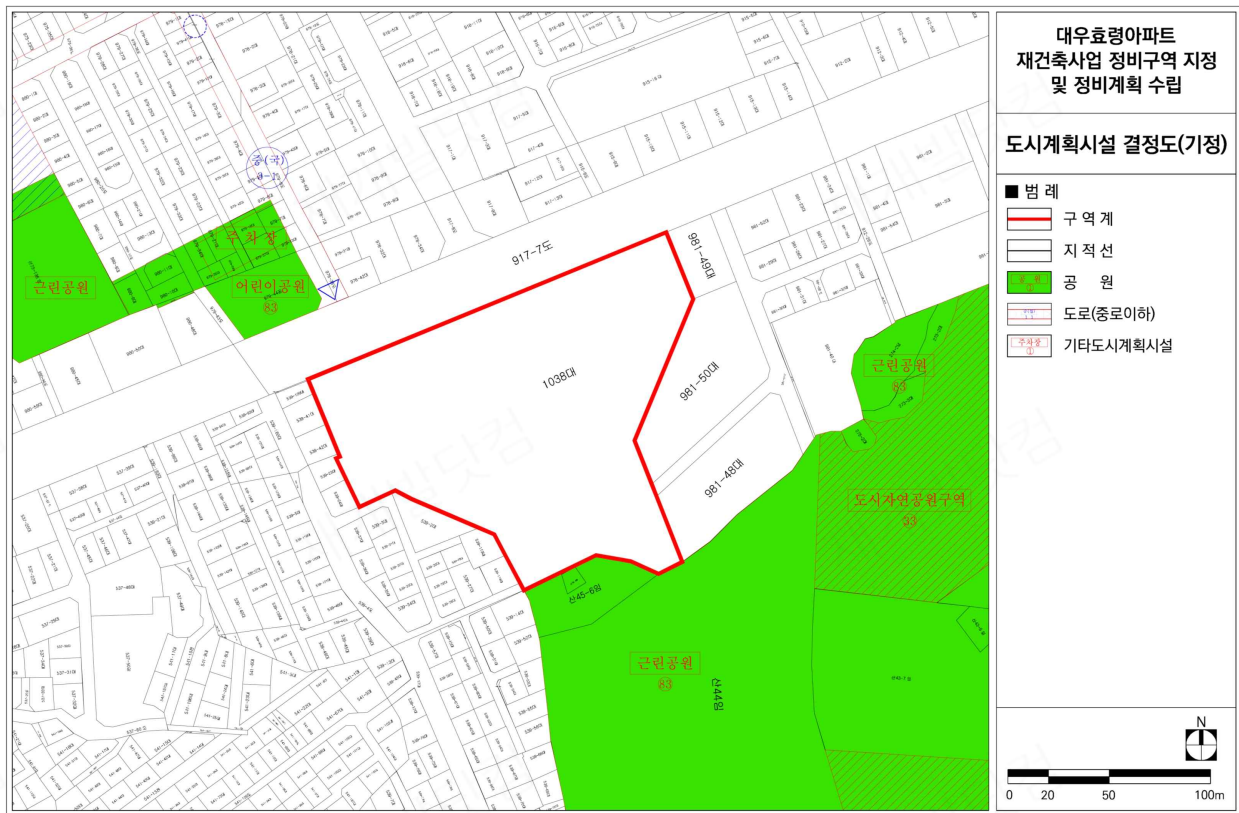
■ 정비구역 결정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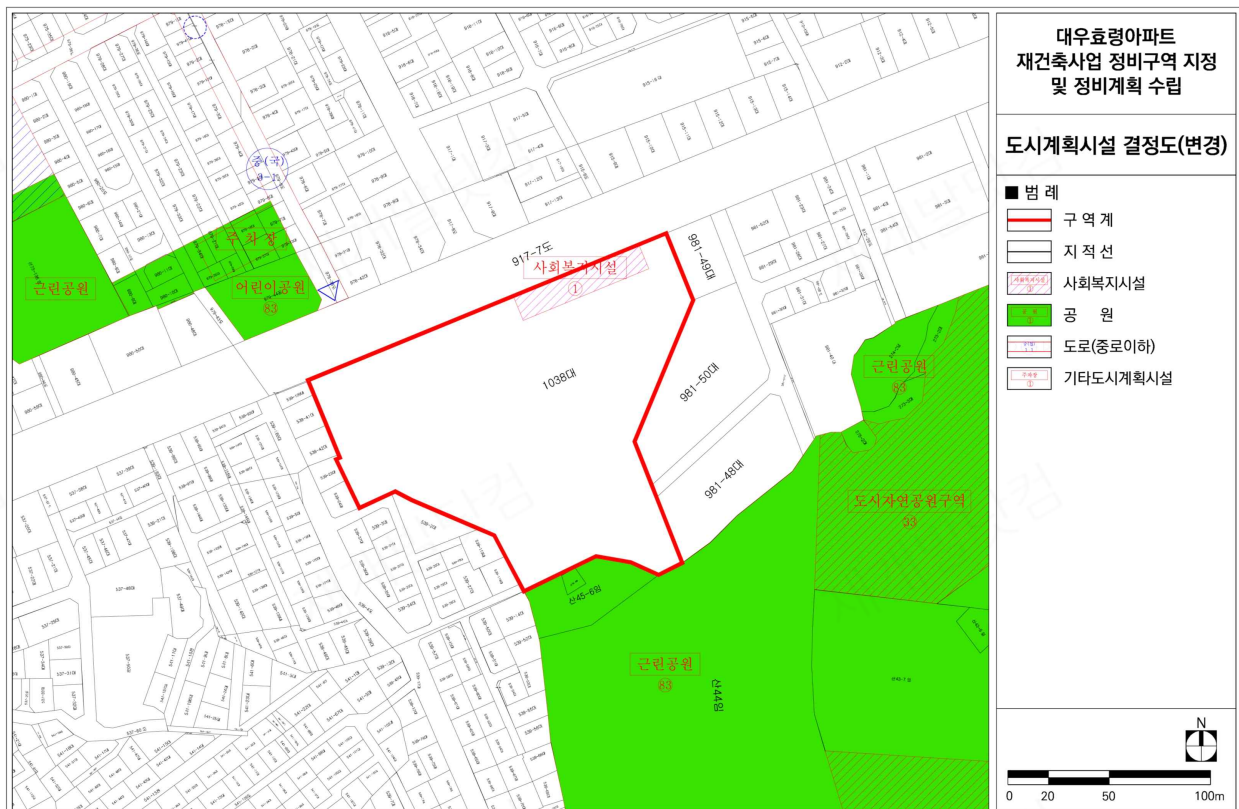
■ 용도지역·지구 결정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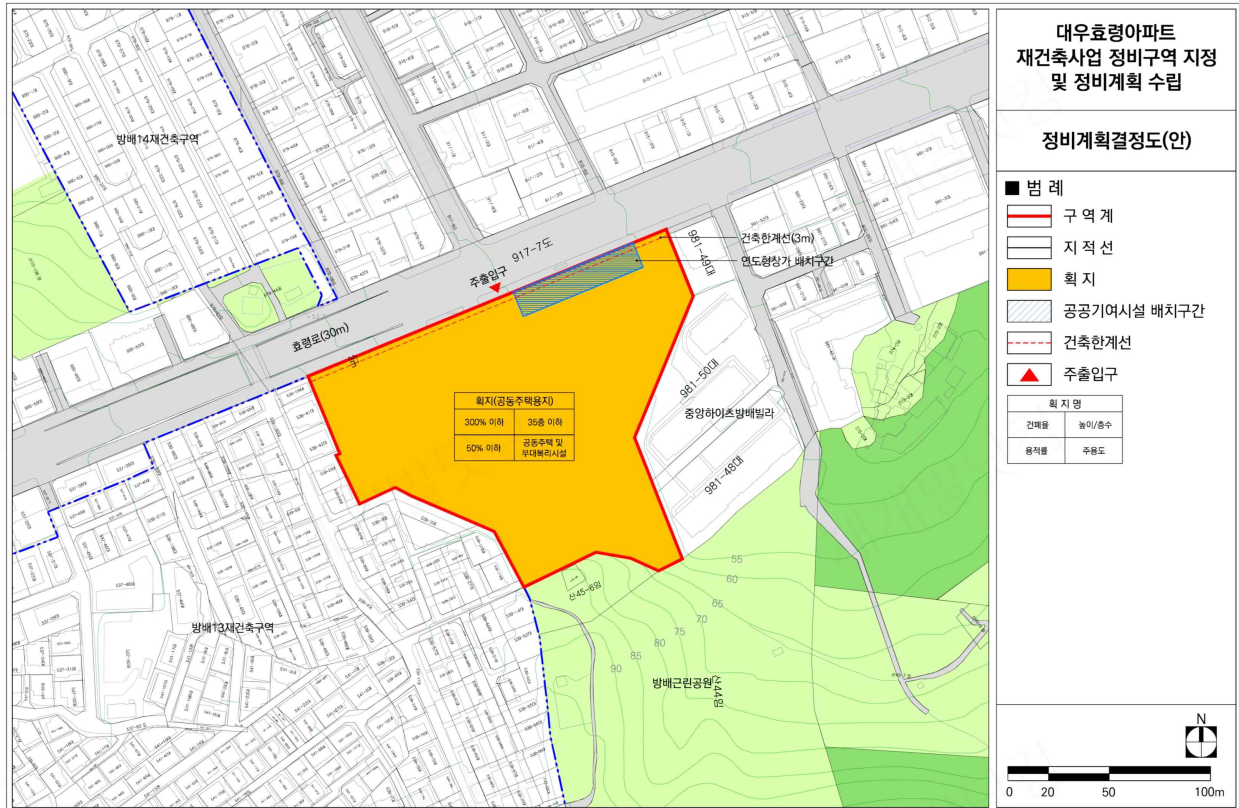
■ 도시계획시설 결정(기정)도



■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도



■ 정비계획결정도



■ 지구단위계획 결정도

